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2024. 11. 1.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423호로 2024년 10월 14일 전승관 의원 외 4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4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있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의3)

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통안전법」,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4.10.17.~2024.10.22.)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5조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제2항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은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규정을 신설함.
- 안 제10조의3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규정하고,

- 안 제11조제1항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보·차도 구분을 위한 보도 설치로 안전을 강화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방호울타리의 우선적 설치에 대해 신설함.

○ 검토결과

-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12세이하) 스쿨존내 보행 교통사고 사상자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2017년 제정되고 2021년 한 번의 개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도시여건과 교통환경에 발맞추어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시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봄.

□ 최근 3년간 어린이 스쿨존내 보행 교통사고

구분	2021	2022	2023	합계
사상(명)	369	389	363	1,121
사망(명)	2	3	2	7
부상(명)	367	386	361	1,114

- 안 제5조에서는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구청장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을 규정하였기에 본 조례안에 신설된 조항은 통학로의 보행환경과 교통사고 예방에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근거를 확보하는데 타당한 내용으로 보임.

- 안 제9조제2항에서는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시책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공무원들과 위원으로 구성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시책 추진이 기대됨.
- 안 제10조의3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를 규정한 내용으로 이곳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단속 및 견인 등의 이동 조치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主) 출입문에서의 주차금지 구역의 설정으로 사고 발생에 대한 선제적 예방책으로 강화하고자 신설한 규정으로 판단됨.
- 안 제11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도를 설치하여 보도와 차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하였고, 아울러 방호 울타리 설치를 통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내용을 신설함.
- 지난 4월 서울 송파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차에 치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해당 장소는 폭이 5M가 안 되는 골목에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

도로로 확인되었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보도에서의 보행만 이루어져도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미숙한 어린이들에게는 교통사고 발생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 사료됨.

- 한편, 지난해 대전 서구 둔산동 스쿨존 내 음주사고로 인도에서 보행중이던 어린이의 사망 당시 장소를 보면 중앙선과 인도 부근에 방호울타리가 미설치 되어 있었음. 방호울타리의 설치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확보는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 자료

1

도로교통법

-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3. 27., 2021. 10. 19., 2023. 4. 18.>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4. 18.>
-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④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2020. 12. 22.>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2023. 4. 18., 2024. 1. 30.>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起點) 및 종점(終點)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3의2. 방호울타리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전문개정 2011. 6. 8.]

[제목개정 2023. 4. 18.]

2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 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 17.>

③ 시·도지사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2. 6. 1.>

④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 또는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 전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 1. 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및 주민·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2024. 1. 23.>

제18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과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